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단142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5,55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부터 2021.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6. 30.자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2021. 7. 1.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95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성대

별지